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의 공론화를 기대한다

김 혜 원*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의 확립이 저소득층에게 이득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오히려 저소득층 내에서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그 이유로서 사회보험제도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주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 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회보험제도에서 약속하는 혜택은 미래의 것이지만 당장 비용으로서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회보험에 가입한 일자리의 경우 실수령 임금액이 감소하고, 그 반대 측면에서 사회보험에 가입되지못한 비공식부문 일자리가 양산되고 있다.

근로자 한 사람을 고용하고자 할 때 지불되어야 하는 사회보험료가 얼마일까? 의외로 사회보험료가 얼마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전체 보험료는 전체 임금의 17% 정도 수준이다. 이 중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7%이고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0% 정도이다. 구성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민연금으로서 9%이고, 다음이 건강보험으로서 4.77%를 차지하며 이들 각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외에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그리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덧붙는다.

사용자가 전일제 일자리 하나를 만들고자 하며, 그 일자리에 대해 월 93만 원 정도의 노동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하자.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일자리를 만들 경우 사용자는 8만 원의 사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월급명세서에 85만 원이 찍히고 근로자는 본인 부담분 사회보험료 6만 7천 원을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78만 3천 원이다. 사용자가 지불하는 노동비용은 93만 원이지만 근로자의 실수령임금액은 14만 7천 원 적은 78만 3천 원에 불과하다.

매월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는 저임금 근로자 입장에서 78만 3천 원과 93만 원의 차이는 매우 크다. 영세사업주 또한 그러하다. 따라서 14만 7천 원이라는 차액을 놓고 저임금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협상이 가능하다.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85만 원의 월급에 합의할 경우 근로자는 6만 7천 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사용자는 8만 원을 절약할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hwkim@kli.re.kr).

수 있다.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 금액에 합의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단기적인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공식부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양산될 수 있다. 비공식부문 일자리가 양산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이 존재하는 경우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비공식부문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둘다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제3자가 이들의 담합을 적발할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으며 둘다 자발적으로 합의한 상황에 단속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한 저임금 근로자나 사용자 중 한 측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여건을 만드는 것

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이다.

예를 들어 월급 85만 원 이하의 경우 사회보험료 전액, 즉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 분 전체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자. 이 경우 근로자는 본인 부담분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실수령액 역시 85만 원이 될 것이다. 사용자의 경우에도 사용자 부담분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노동비용을 8만 원 절약할 수 있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정책 실시 전에 비해 저렴한 노동비용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저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이득을 주는 정책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이 경제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다. 지불되지 않는 보험료는 누군가가 지불해야 한다. 만약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의 비용을 일반 조세를 통해 부담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도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사회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 현재의 저조한 자영업자 소득파악 수준을 감안할 때 재정 파탄이 명약관화하다. 이런 점에서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저임금 근로자에 한정하고 그 비용은 저임금이 아닌 부문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자신도 언젠가 저임금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고려한다면 현재 고임금 부문의 근로자는 위험 회피의동기에서 비용 부담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여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사회보험료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특히 저임금 노동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저임금 노동시장의 고용이 줄어들고 저임금 근로자의실수령 임금이 줄어들었거나, 저임금 부문에서 비공식 고용이 양산되는 등의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회보험료의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부족했으며, 사회보험료가 저임금 노동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교정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 및 노·사 모두에서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 비록 10년 동안 손놓고 있었다고 해서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이른 때다. 근로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높아진 지금이 바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의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다. [[10]